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4.7.20.(화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-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- 2004. 7. 14 :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가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중 도 및 일부 시·군 새마을 단체가 사단 법인등록을 함으로써 명칭이 변경되었음
- 위와 관련하여 명칭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 정비(제1조 및 제3조)
- 새마을운동 관련 명칭 정비(제4조 및 제5조)
 -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→ 새마을운동중앙회
 - 새마을중앙협의회도지부 → 충청북도새마을회
 - 도지부회장 → 도새마을회장
 - 시·군지회장 → 시·군지회장, 시·군새마을회장
- ※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시·군지회는 기존 명칭 사용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)

-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 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역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자녀”를 “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”로 한다.

제3조중 “남녀 새마을지도자”를 “새마을지도자”로 한다.

제4조중 “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·군지회장”을 “새마을운동중앙회 시·군지회장 또는 시·군 새마을회장”으로 하고, “새마을중앙협의회도지부(이하 “도지부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새마을회(이하 “도 새마을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“시·군 새마을지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”을 “시·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도 지부회장”을 “도 새마을회장”으로 하고, “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”을 “새마을운동중앙회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도 지부회장”을 “도 새마을회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중 “항구적 발전과 조국근대화”를 “항구적 발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역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및 그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<u>새마을장학금(이하“장학금”이라 한다)</u>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의 자녀로서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<u>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u> 다만,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- 4. (생략)</p>	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</p> <p>.....<u>새마을지도자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-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추천)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<u>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·군지회장(이하“시·군지회”라 한다)과 시장·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중앙협의회 도지부(이하“도지부”라 한다)회장이</u>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선정한다. 다만, 시군지회장은 <u>시·군 새마을지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4조(추천)</p> <p><u>새마을운동중앙회 시·군지회장 또는 시·군 새마을회장</u>.....</p> <p>..... <u>충청북도새마을회(이하 “도 새마을회”라 한다)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시·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</u>.....</p> <p>.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선정) ① <u>도지부회장이</u> 시·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도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의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이내에 <u>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</u>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- 4. (생략)</p>	<p>제5조(선정) ① <u>도 새마을회장</u> <u>새마을운동중앙회장</u></p> <p>1. -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지급의 정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·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<u>도지부회장</u>에게 보고하고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.</p>	<p>제9조(지급의 정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 새마을회장</u> · </p>
<p>제10조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, 새마을운동의 <u>향구적 발전과 조국근대화</u>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장학생의 의무) <u>향구적 발전</u></p>